

2026년 9월 4일(금)

용인시보

차 례

● 고 시

- 용인시 고시 제2026-499호 [[고시]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1호 기타열공급설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공 고

- 용인시 공고 제2026-2566호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용인시 공고 제2026-2567호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용인시 공고 제2026-2568호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용인시 공고 제2026-2569호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39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취소 청문 알림]

용인시 고시 제2026-499호

고 시

1.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28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1호 기타열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 031-6193-32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9. 4.

용인시장

□ 실시계획 작성 내용

가. 위 치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2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용인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1호 기타열공급설비) 사업

└ 명 칭 : 용인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1호 기타열공급설비) 내 가설건축물 축조사업

다. 사업시행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1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하동근

라. 사업시행기간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9. 12. 31.

마. 사업규모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1	열공급설비	기타열공급설비	수지구 풍덕천동 1128번지	23,372	95.01.17. (경고1995-481)	
시행	1	열공급설비	기타열공급설비	수지구 풍덕천동 1128번지	27	-	가설건축물 (근로자 교육공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 부	편 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3,570.4	27						
1	수지구 풍덕천동	1128	대	23,570.4	27	한국지역** 공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26-6번지 일원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합니다.

2026년 9월 4일

용 인 시 장

1. 공람기간

2026. 09. 04. ~ 2026. 10. 03. (30일간)

2. 공람장소

용인시청 주택정비과(별관 1층, TEL: 031-6193-3232)

3. 계획의 범위

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26-6번지 일원의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나. 주요 계획 내용: 별지 내용과 같음

※ 김량장1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4. 계획수립 도서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정비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관계행정(부서)기관 협의,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용인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서

☐ 사업명 :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소유물위치 :

○ 연 락 처 :

제목	
일시 2026. . . 서명 (인)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처인구 김량장동 226-6번지 일원	-	증) 51,221	51,221	-

나. 정비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비고
신설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26-6번지 일원	51,22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총계		51,221.0	100.0	-
주택용지		38,384.0	75.0	-
정비기반시설	소계	12,562.0	24.5	-
	도로	10,546.0	20.6	-
	주차장	2,016.0	3.9	2개소
공동이용시설		275.0	0.5	1개소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55	20~25	보조 간선	일반 도로	2,010	대로 1-4	대로 3-13	-	
기정	소로	1	3	10~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67 (194)	중로 3-163	중로 2-32	75.3.5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8	소로 1-3	소로 3-23	78.4.20	
기정	소로	2	44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79	소로 1-3	소로 2-45	75.3.5	
기정	소로	2	45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9	소로 1-3	소로 1-4	75.3.5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66 (72)	소로 1-4	소로 2-45	68.6.25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66	소로 1-4	소로 2-45	68.6.25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7	중로 1-55	소로 1-3	68.6.25	

※ ()는 사업구역내의 연장임, 금번사업에 도로 정비에 관한 계획 없음.

나.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처인구 김량장동 196-1 일원	-	증)990	990	-	
신설	B	주차장	처인구 김량장동 194-25 일원	-	증)1,026	1,026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A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990㎡	■ 대상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공간 추가 확보와 좁은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B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026㎡	■ 대상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공간 추가 확보와 좁은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대지면적(㎡)	규모		비 고
				연면적㎡	층수	
신 규	공동이용시설	처인구 김량장동 200-13번지 일원	275	300	2	주민커뮤니티 및 경로당

※ 공동이용시설의 규모 등 세부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름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보존·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7.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건폐율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용적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높이	법정 최고층수
배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 유도
형태	경사지붕 설치 권장
색채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포장	투수형 포장 권장
기타	- 건축물 1층 바닥 마감 높이는 대지에 접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의 30cm 이내로 계획 (지형 및 재해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울타리 설치 시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구역	계 획 내 용
환경보전	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	- 사업대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옥외 공간 조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 - 사업대상 시설이 건축물인 경우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	- 사업대상 시설의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의 골목길 일대 상하수도 및 포장 개선을 통해 풍수해 예방대책 마련 - 구역 내 사업대상 시설에 대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대책 수립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 내 행위 등 은 같은법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 규정에 따름
- 도로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환경 증대

10. 세입자 주거대책 (해당없음)

1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26-6번지 일원	-	증)51,221	51,22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비 고
신설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26-6번지 일원	51,22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51,221	-	51,22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2,186	-	12,186	23.8	
제2종일반주거지역	39,035	-	39,035	76.2	

12. 정비사업시행 시행방법 및 예정시기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용인특례시장	
기존주택의 정비·개량	계획 수립 이후	토지소유자 등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통학로 보차분리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요 통학로 인도설치 및 안전펜스 설치	-
조명개선	• 야간 조명 개선을 위해 골목길 가로등 9개소 설치	
CCTV	• 주요 교차로, 골목길 등에 2개소 설치	
안전비상벨	• 사고 발생시 신고가 용이하도록 안전비상벨 3개소 설치	

14.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지역 내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발굴 및 계획수립 유도
- 지역 내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 마련으로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형성

15.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끝.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14-2번지 일원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합니다.

2026년 9월 4일

용 인 시 장

1. 공람기간

2026. 09. 04. ~ 2026. 10. 03. (30일간)

2. 공람장소

용인시청 주택정비과(별관 1층, TEL: 031-6193-3232)

3. 계획의 범위

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14-2번지 일원의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예정구역

나. 주요 계획 내용: 별지 내용과 같음

※ 마평2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4. 계획수립 도서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정비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관계행정(부서)기관 협의,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용인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서

☐ 사업명 :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소유물위치 :

○ 연 락 처 :

제목	
일시 2026. . . 서명 (인)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처인구 마평동 614-2번지 일원	-	증) 25,959	25,959	-

나. 정비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비고
신설	-	처인구 마평동 614-2번지 일원	25,959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총계		25,959	100.0	-
주택용지		21,730	83.7	-
정비기반시설	소계	3,917	15.1	-
	도로	3,042	11.7	-
	공원	41	0.2	1개소
	주차장	834	3.2	2개소
공동이용시설		312	1.2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59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70 (254)	중로 1-60	마평동 616-2	75.03.05. (경고80)	금번사업 대상아님
기정	소로	3	60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5	중로 1-60	용인소로 2-59	75.03.05. (경고80)	금번사업 대상아님
기정	소로	3	6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1	대로 1-5	용인소로 2-59	75.03.05. (경고80)	금번사업 대상아님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2	대로 1-5	용인소로 2-59	-	금번사업대상

※ ()는 사업구역내의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소로 3-A	■ 도로 신설 - 면적 : 323㎡ - L = 52m - B = 6m	■ 주택밀집지역에 화재시 안전을 위해 소방도로 신설	

나.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처인구 마평동 614-3번지 일원	-	증)366	366	-	
신설	2	주차장	처인구 마평동 635-2번지 일원	-	증)468	468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366㎡	■ 주차장 신설을 통해 구역 내 불법주정차 예방에 기여	
2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468㎡	■ 주차장 신설을 통해 구역 내 불법주정차 예방에 기여	

다. 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소공원	마평동 614-2번지 일원	-	증)41	41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A	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41㎡	■ 구역 내 공원시설이 전무하여 공원 신설을 통해 주민의 여가생활을 증진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대지면적(㎡)	규모		비 고
				연면적㎡	층수	
신 규	주민공동이용시설	마평동 614-5번지 일원	312	300	2	주민커뮤니티 및 경로당

※ 공동이용시설의 규모 등 세부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름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보존·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개량

7.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건폐율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용적률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높이	• 법정 최고층수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형태	• 경사지붕 설치 권장
색채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포장	• 투수형 포장 권장
기타	• 건축물 1층 바닥 마감 높이는 대지에 접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의 30cm 이내로 계획 (지형 및 재해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울타리 설치 시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구역	계 획 내 용
환경보전	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	- 사업대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옥외 공간 조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 - 사업대상 시설이 건축물인 경우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	- 사업대상 시설의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의 골목길 일대 상하수도 및 포장 개선을 통해 풍수해 예방대책 마련 - 구역 내 사업대상 시설에 대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대책 수립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 내 행위 등 은 같은법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 규정에 따름

10. 세입자 주거대책 (해당없음)

1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마평2 지구단위계획구역	처인구 마평동 614-2번지 일원	-	증) 25,959	25,959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비 고
신설	-	처인구 마평동 614-2번지 일원	25,959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25,959	-	25,95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959	-	25,959	100.0	

12. 정비사업시행 시행방법 및 예정시기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용인특례시장	
기존주택의 정비·개량	계획 수립 이후	토지소유자 등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CTV 설치	• 기존 설치 된 CCTV 시야각의 사각지대와 신설되는 쉼터 주변을 중심으로 CCTV를 신설하여 감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범죄 예방환경 조성	-
보안등 설치	• 야간 보행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보안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범죄 발생 가능성을 저감	

14.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지역 내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발굴 및 계획수립 유도
- 지역 내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 마련으로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형성

15.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끝.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94-29번지 일원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합니다.

2026년 9월 4일

용 인 시 장

1. 공람기간

2026. 09. 04. ~ 2026. 10. 03. (30일간)

2. 공람장소

용인시청 주택정비과(별관 1층, TEL: 031-6193-3232)

3. 계획의 범위

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94-29번지 일원의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나. 주요 계획 내용: 별지 내용과 같음

※ 고림2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4. 계획수립 도서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정비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서

☐ 사업명 :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소유물위치 :

○ 연 락 처 :

제목	
일시 2026. . . 서명 (인)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처인구 고림동 794-29번지 일원	-	증) 40,900	40,900	-

나. 정비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비고
신설	-	처인구 고림동 794-29번지 일원	40,900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총계		40,900	100.0	-
주택용지		33,483	81.9	-
정비기반시설	소 계	7,417	18.1	
	도로	4,263	10.3	
	공원	225	0.6	
	주차장	2,929	7.2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6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0 (104)	용인소로 2-64	용인소로 3-55	90.04.02 (경고122)	금번사업 대상아님
기정	소로	3	6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8 (69)	용인소로 2-64	용인소로 3-55	90.04.02 (경고122)	금번사업 대상아님
기정	소로	3	52	7~9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7	용인소로 2-63	용인소로 2-61	90.04.02 (경고122)	금번사업 대상아님
기정	소로	3	53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1	용인소로 2-64	용인소로 1-16	90.04.02 (경고122)	부분정비
기정	소로	3	57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52 (94)	중로 2-28	고림동 770-2	90.04.02 (경고122)	금번사업 대상아님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6	용인소로 3-57	용인소로 3-53		금번사업 대상

※ ()는 사업구역내의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소로 3-A	■ 도로 신설 - 면적 : 723㎡ - L = 116m - B = 6m	■ 구역 내 마을안길 소방도로 부재로 인해 재난 사항 시 소방차량 진입 불가로 인해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도로 신설	

나.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고림동 903-24번지 일원	-	증) 246	246	-	
신설	2	주차장	고림동 903-26번지 일원	-	증) 1,249	1,249	-	
신설	3	주차장	고림동 797-7번지 일원	-	증) 1,434	1,434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246㎡	■ 주차장 신설을 통해 구역 내 불법주정차 예방에 기여	
2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249㎡	■ 주차장 신설을 통해 구역 내 불법주정차 예방에 기여	
3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434㎡	■ 주차장 신설을 통해 구역 내 불법주정차 예방에 기여	

다. 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소공원	고림동 903-26번지 일원	-	증) 225	225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A	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225㎡	구역 내 공원시설이 전무하여 공원 신설을 통해 주민의 여가생활을 증진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없음 - 기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용 계획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보존·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개량

7.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등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차고 및 주기장
건폐율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용적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높이		법정 최고층수
배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 유도
형태		경사지붕 설치 권장
색채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포장		투수형 포장 권장
기타		- 건축물 1층 바닥 마감 높이는 대지에 접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의 30cm 이내로 계획 (지형 및 재해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울타리 설치 시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구역	계 획 내 용
환경보전	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	• 사업대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옥외 공간 조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 • 사업대상 시설이 건축물인 경우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	• 사업대상 시설의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의 골목길 일대 상하수도 및 포장 개선을 통해 풍수해 예방대책 마련 • 구역 내 사업대상 시설에 대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대책 수립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 내 행위 등 은 같은법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 규정에 따름

10. 세입자 주거대책 (해당없음)

1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고림2 지구단위계획구역	처인구 고림동 794-29번지 일원	-	증) 40,900	40,90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비 고
신설	-	처인구 고림동 794-29번지 일원	40,900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40,900	-	40,900	100.0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0,900	감) 40,9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0,900	40,900	100.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처인구 고림동 794-29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900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2. 정비사업시행 시행방법 및 예정시기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용인특례시장	
기존주택의 정비·개량	계획 수립 이후	토지소유자 등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CTV 설치	• 기존 설치 된 CCTV 시야각의 사각지대와 신설되는 쉼터 주변을 중심으로 CCTV를 신설하여 감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범죄 예방환경 조성	-
양심거울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양심거울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억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4.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지역 내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발굴 및 계획수립 유도
- 지역 내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 마련으로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형성

15.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끝.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04번지 일원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합니다.

2026년 9월 4일

용 인 시 장

1. 공람기간

2026. 09. 04. ~ 2026. 10. 03. (30일간)

2. 공람장소

용인시청 주택정비과(별관 1층, TEL: 031-6193-3232)

3. 계획의 범위

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04번지 일원의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나. 주요 계획 내용: 별지 내용과 같음

※ 마북1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4. 계획수립 도서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정비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관계행정(부서)기관 협의,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용인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서

☐ 사업명 :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소유물위치 :

○ 연 락 처 :

제목	일시 2026. . . 서명 (인)
----	--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흥구 마북동 304번지 일원	-	증) 13,318	13,318	-

나. 정비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비고
신설	-	기흥구 마북동 304번지 일원	13,318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총계		13,318	100.0	-
주택용지		10,732	80.6	-
정비기반시설	소 계	2,290	17.2	
	도로	1,544	11.6	
	공원	64	0.5	
	주차장	682	5.1	
공동이용시설		296	2.2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27	3.4~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53 (134)	구성소로 2-25	구성소로 1-8호	03.06.23. (용고155)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8	중로 3-65	구성소로 2-27	03.06.23. (용고155)	

※ ()는 사업구역내의 연장임, 금번사업에 도로 정비에 관한 계획 없음.

나.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마북동 315-4번지 일원	-	증) 682	682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682㎡	■ 주차장 신설을 통해 구역 내 불법주정차 예방에 기여	

다. 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소공원	마북동 301-7번지 일원	-	증)55	55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A	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55㎡	■ 구역 내 공원시설이 전무하여 공원 신설을 통해 주민의 여가생활을 증진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대지면적(㎡)	규모		비 고
				연면적㎡	층수	
신 규	공동이용시설	마북동 301-7번지 일원	275	300	2	청소년커뮤니티

※ 공동이용시설의 규모 등 세부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름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보존·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개량

7.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건폐율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용적률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높이	• 법정 최고층수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형태	• 경사지붕 설치 권장
색채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포장	• 투수형 포장 권장
기타	• 건축물 1층 바닥 마감 높이는 대지에 접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의 30cm 이내로 계획 (지형 및 재해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울타리 설치 시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구역	계 획 내 용
환경보전	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	• 사업대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옥외 공간 조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 • 사업대상 시설이 건축물인 경우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	• 사업대상 시설의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의 골목길 일대 상하수도 및 포장 개선을 통해 풍수해 예방대책 마련 • 구역 내 사업대상 시설에 대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대책 수립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 내 행위 등 은 같은법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 규정에 따름

10. 세입자 주거대책 (해당없음)

1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마북1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흥구 마북동 304번지 일원	-	증) 13,318	13,31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비 고
신설	-	기흥구 마북동 304번지 일원	13,318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13,318	-	13,31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3,318	-	13,318	100.0	

12. 정비사업시행 시행방법 및 예정시기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용인특례시장	
기존주택의 정비·개량	계획 수립 이후	토지소유자 등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CTV 설치	기존 설치 된 CCTV 시야각의 사각지대와 신설되는 쉼터 주변을 중심으로 CCTV를 신설하여 감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범죄 예방환경 조성	-

14.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지역 내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발굴 및 계획수립 유도
- 지역 내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 마련으로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형성

15. 관계서류 및 도면 : 계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끝.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동법 제136조(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의 청문일에 참석 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4.

용인시 처인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행위 기간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 청문

2. 처분원인 :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3. 처분대상자 및 대상 현황

가. 처분대상자 : ‘불임’ 내역 참조

나. 처분대상 현황 : ‘불임’ 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4. ~ 2026. 9. 23.

5.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청문 일시 : 2026. 9. 30.(수) 16:00 (의견제출기한 2026. 9. 23.까지)
- 청문 장소 : 처인구청 본관 상설감사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우리시 처인구 일원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바 있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공시송달 하는 사항이며,
- 위 일정과 같이 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거나 지정된 청문 일시, 장소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선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 우리 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청문에 참석할 때에는 위임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여야 합니다.

※ 청문 참석여부는 우리구에 사전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처인구 도시건축2과(☎031-6193-5514~5518, 5496, 5464, 5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개발행위허가 청문 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1부. 끝.

[붙임1]

개발행위허가 청문내역

연번	허가번호	읍 면	리 명	지 번	수허가자	용 도	허가일	만료일	비 고
1	제2005-388호	원삼면	학일리	486-1	안○○	단독주택(단독주택) 부지조성	2005-09-05	2017-02-28	제2회청문
2	제2005-546호	양지읍	제일리	176-2	안○○	단독주택(단독주택) 부지조성	2005-11-16	2024-01-31	제2회청문
3	제2005-572호	백암면	근삼리	282-2	안○○	단독주택(단독주택)부지조성	2005-12-05	2007-11-30	제2회청문
4	제2005-641호	양지읍	추계리	24-3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부지증설	2005-12-23	2007-11-30	제2회청문
5	제2006-355호	양지읍	주북리	225 외 1필 지	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부지조성	2006-12-14	2019-12-30	제2회청문
6	제2007-45호	양지읍	제일리	578-3외 4 필지	정○○	제1종 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	2007-03-09	200902-28	제2회청문
7	제2007-144호	양지읍	양지리	161-2	세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제2-4공구)에 따른 야 적장 부지조성	2007-06-27	2010-12-20	제2회청문
8	제2007-192호	양지읍	양지리	314-3 외 2필 지	김○○	단독주택(단독주택) 부지조성	2007-09-04	2019-09-04	제2회청문
9	제2007-194호	양지읍	양지리	산14-3	박○○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	2007-09-04	2019-09-30	제2회청문
10	제2007-204호	양지읍	주북리	774	(주)동○	물건적치	2007-09-14	2009-08-15	제2회청문
11	제2007-218호	양지읍	평창리	267-9 외 1 필지	강○○	단독주택(단독주택) 부지조성	2007-09-19	2021-12-31	제2회청문
12	제2007-221호	양지읍	평창리	267-9 외 1 필지	강○○	단독주택(단독주택) 부지조성	2007-09-19	2018-12-31	제2회청문

13	제2008-69호	양지읍	평창리	267-10 외 1	강○○	단독주택(단독주택) 부지조성	2008-04-04	2021-12-31	제2회청문
14	제2008-222호	양지읍	주북리	465-7 외 1 필지	용인 L○○	금학천 환경개선사업 자재야적장 부지조성	2008-11-20	2009-10-25	제2회청문
15	제2010-130호	양지읍	대대리	592-2	김○○	단독주택(단독주택) 부지조성	2010-05-14	2021-12-31	제2회청문
16	제2010-249호	이동읍	서리	910-19	이○○	단독주택(단독주택) 부지조성	2010-09-17	2013-08-31	제2회청문
17	제2010-250호	이동읍	서리	910-19	이○○	단독주택(단독주택) 부지조성	2010-09-17	2013-08-31	제2회청문

[붙임2]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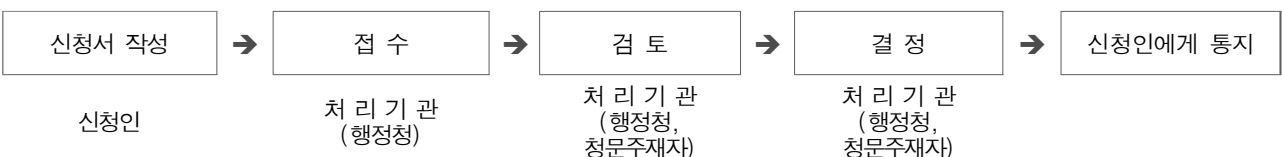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